【발제문】

金融改革의 制度的 側面: 評價와 展望

韓國金融研究院 研究委員 李 東 傑

1. 金融改革의 定義

- financial reform = financial restructuring + operational reform
 - financial restructuring = B/S restructuring ⇒ 안전성(safety and soundness) 제고 ⇒ 금융시장 정상화(또는 붕괴 방지)
 - * 자산건전화: 부실채권 정리, 부실금융기관 정리
 - * 자본충실화: cushion 제고
 - operational reform ⇒ 위험관리 개선 및 수익성 제고
 - * 경영혁신: 제도개선을 통한 유도 ⇒ 관행으로 정착
 - * 금융산업구조 개편
 - 안전성 ⇔ 수익성: 적절한 수준에서 동시에 추구
 - * 금융기관(또는 시장)은 위험을 ①identify, ②measure, ③accept and manage하는 기관 ⇒ 위험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수익을 창출 ⇒ 금융중개기능
- 정책당국의 역할: 금융산업·시장의 안전성(safety and soundness) 유지
 - 금융기관 자율성 보장 + 법·규정 및 원칙에 따라 감독 집행
 - 시장노출 촉진 ⇒ 시장규율 강화 ⇒ 시장자율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
 -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등 위기시 대응 ⇒ 위기 확산 방지

2. 金融改革 推進現況: 制度的 諸側面

- 1) 금융구조조정
-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법·제도 정비 및 관련 감독규정 강화

-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: 부실금융기관 감자명령권, 정부 출자 근거, 합병·감자절차 간소화
- 예금자보호법 개정: 정리금융기관제도, P&A, 출자의 근거 마련

금융구조조정 시장 조성

- 외국인의 국내금융산업 진입 및 적대적 M&A 허용, M&A 활성화
- CRC 및 CRV제도 도입, ABS 발행 허용 등

2) 통화·감독체계 정비

- 통화관리체계: 한은법 개정
 - 한은 총재 중심의 금융통화위원회 구성
 -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적 수립 및 자율적 집행의 근거 마련

- 금융감독조직 정비

- 금융감독위원회 설치
- 통합 금융감독원 설립
- 예금보험기구 통합

금융감독규정 개선

- 건전성 규제기준 강화
 - *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및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인상
 - * FLC, 시가평가 등 도입
 - * 원화 및 외화 유동성비율 강화
 - * 지급보증 충당금 적립제도 도입
- 편중여신관리제도 개선
 - * 동일인 및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도, 거액여신규제 등
- 적기시정조치(PCA) 제도 도입: 부실금융기관정리제도 정비, 적기시정 조치 정비·강화
 - * 발동기준, 도입근거 명문화, 조치 의무화

- 기타
- 3) 금융기관 내부경영 선진화 유도
- 지배구조개선
 - 외국인의 은행임원 선임 허용
 - 은행장 및 임원선임제도 개선
 - 이사회제도 개선: 사외이사 중심, 이사회내 소위원회 구성
 - 준법감시인, 감사위원회 제도 등 통제장치 강화
 - 부실책임 금융기관 임원의 선임자격 제한 강화
 - 대주주 자격요건 강화
- 금융기관 경영공시 강화
 - 공시항목 확충, 수시공시 강화, 불성실·허위공시에 대한 정정·재공 시 및 벌칙 강화
- 리스크관리 강화 및 여신관행 혁신 유도
- 4) 시장 및 인프라 구축
- Mutual Fund 제도 도입, 주식, 채권 및 선물·옵션시장 개방
- 시가회계제도 도입, 회계기준 선진화, 외부감사인 책임 강화
- 신용정보업 개방, 신용정보의 신뢰성 제고 등
- 채권시가평가제도 도입
- 외국인 투자개방 및 외국인의 적대적 M&A 전면 허용

3. 評價와 展望

- 1) B/S restructuring
- B/S restructuring은 거의 마무리 단계
 -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의 결과 결과적으로는 성공
 - 남은 과제: 정부출자 금융기관 경영정상화 및 민영화(은행, 대생, 한투 및 대투, 서울보증보험 등), 신협 및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, 은행편중 심화 개선 등

- 문제점

- 절차상의 하자
- 구조조정 집행의 일관성 결여 및 자의성
- 구조조정 시장 조성 미진
- 2) 제도적 미진사항
- 한은 독립성 제고
 - 금통위원 선임 투명화
 - 한은 예산권
- 금융감독기구 통합 및 독립성 강화
- 도산법 정비
-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
 - 대주주에 대한 감독 및 적격성 요건
 - 임원선임의 투명성 강화 및 부적격자, 자격미달자 배제
 - 이해상충(conflict of interest) 행위 금지

- 소수주주권 강화 등
- 3) 법·제도의 운영상 문제점
- 구조조정 속도 및 대상 선정의 자의성
 - 구조조정 완결 지연
 - 모랄 헤저드 조장 ⇒ 감독규율 및 시장규율 확립 저해
- 감독규정 적용의 자의성
 - BIS비율, 부실채권비율 등의 산정에 있어서의 자의성
 - 대주주 자격요건 등 기타
- 감독기관·직원의 관료화 및 후진성
 - 감독기관의 권력기관화
 - 감독기술 및 능력의 취약성
 - 자료공개 거부 등 비밀주의
- 시장변화에 대한 감독기관·직원의 대응능력 부족
 - 은행산업 과점화에 대응한 감독체계 개선 미흡
 - 가계대출 문제 조기대응 실패
- 감독기관의 국제조류 대응 부족
 - \bigcirc New Basel Capital Accord